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11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서영교・박희승・임오경
정준호・양부남・박홍배
송재봉・김문수・이성윤
최혁진・박선원・김태선
복기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4조제3항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2027년----------.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④ ----------2027년----------. ----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⑤ ----------2027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